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

3월말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주세요

- 지방세법 개정('15.6.1)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는 '16년 3월 31일까지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 대상자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 ◇ 제출자료 :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국내원천)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
- ◇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
(전산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
- ◇ 제출기한 : '16년 3월 31일까지(최초 시행)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유형	제출방법	제출장소
온라인 제출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제출 (전국)	위택스(www.wetax.go.kr)
	엑셀 작성 제출 (서울)	이택스(etax.seoul.go.kr)
직접방문 제출	전산매체(CD, DVD, USB) 제출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엑셀 작성 제출	
	서면제출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4]	

※ 서면제출의 경우 엑셀파일로 제출 권장 (엑셀 레이아웃 : 위택스·이택스·지방자치단체 제공)

※ 제출특례 : 지점법인 자료를 일괄 제출하는 본점법인, 수입업체 자료를 일괄 대리제출하는 세무대행인은 특별징수의무자 본점 법인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출

- 작성요령 및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홈페이지(www.wetax.go.kr) > 공지사항 > 15년 귀속 이자배당 특별징수지급명세서 파일제출 매뉴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매체를 통한 제출의 경우 CD 라벨 항목 기재요령에 따라 라벨항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위택스로 제출했던 자료를 자치단체로 중복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납세지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지방자치단체 세무과(부과과) 지방소득세팀